폐비닐 전용봉투 제작 과업지시서

폐비닐 전용봉투 구입에 대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당사자를 "강북구"라 하고 계약 상대방을 "계약상대자"로 하여 다음과 이 계약을 체결한다.

- 1. 과업기간은 계약일로부터 40일로 한다.
- 2. 인쇄 동판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.
- 3. 계약상대자는 납품요구서에서 정한 납품기한 내에 물품을 납품하여야 한다.
- 4. 물품제작 전에 물품사양을 확인받아 제작한다.
- 5. 납품은 계약일로부터 40일 이내에 완료하며, 상황에 따라서 분할납품 할 수 있다.
- 6. 지정한 장소로 납품하며 납품확인서를 제출한다.
- 7. 납품이 완료되면 동판을 반납한다.
- 8.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일방적으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 - 계약을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사유가 있을 때
 - 2회 이상 납품기일을 어기거나, 납품된 물품 중에 하자가 발생하고 보완지시를 어겼을 때
 - 계약에 따른 권리의무를 타인에게 양도한 때
- 9.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「지방자치단체를 당하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을 준용한다.